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1월 17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1월 17일

3. 제안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은 2006년 1월 2일 지정·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후 결정에 앞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광역도시계획안 개요

(1) 목표연도 : 2030년

(2) 공간범위 : 3,598km²(충북 1,456·충남 1,602·대전 540)

- 충북도 :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증평군 전역

- 충청남도 :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전역, 천안시 일부(동면, 병천면, 수신면, 성남면, 광덕면)

- 대전시 : 전역
- (3) 계획인구 : 370~400만명

(4) 내용적 범위

- 목표·전략, 공간구조 등 기본구상
- 토지이용, 광역교통, 녹지관리, 광역시설 등 부문별 계획
-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 도시기본계획에 준하는 사항
(기본방향 제시)

나. 추진경위

- 2005. 7 : 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건설교통부)
 - 용역사 : 국토연구원, 2005. 7. 8 ~ 2006. 12. 31
- 2005. 9 : 광역도시계획 협의회 구성
 - 1~3차 협의회 개최하여 광역계획권 검토
- 2005. 12 : 광역계획권 지정안 심의(추진위원회)
- 2005. 12 : 광역계획권 지정·고시
 - 건설교통부, 2006. 1. 2
- 2006. 2 ~ 5 : 기본구상안 작성
 - 관계기관 실무 협의회, 4~6차 협의회 개최를 통한 검토
- 2006. 6 : 협의회 민간위원 간담회
(인구지표, 지역별 기능분담안 검토)
- 2006. 8 : 부문별 계획 초안 작성(7차 협의회에서 검토)
- 2006. 12 : 계획 내용에 대한 협의 및 수정, 보완(8, 9차 협의회)
- 2006. 12. 19 ~ 21 : 공청회 개최(충남, 대전, 충북)
- 2007. 1~2 :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협의
- 2007. 1~2 :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협의

○ 2007. 3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 심의 및 고시(건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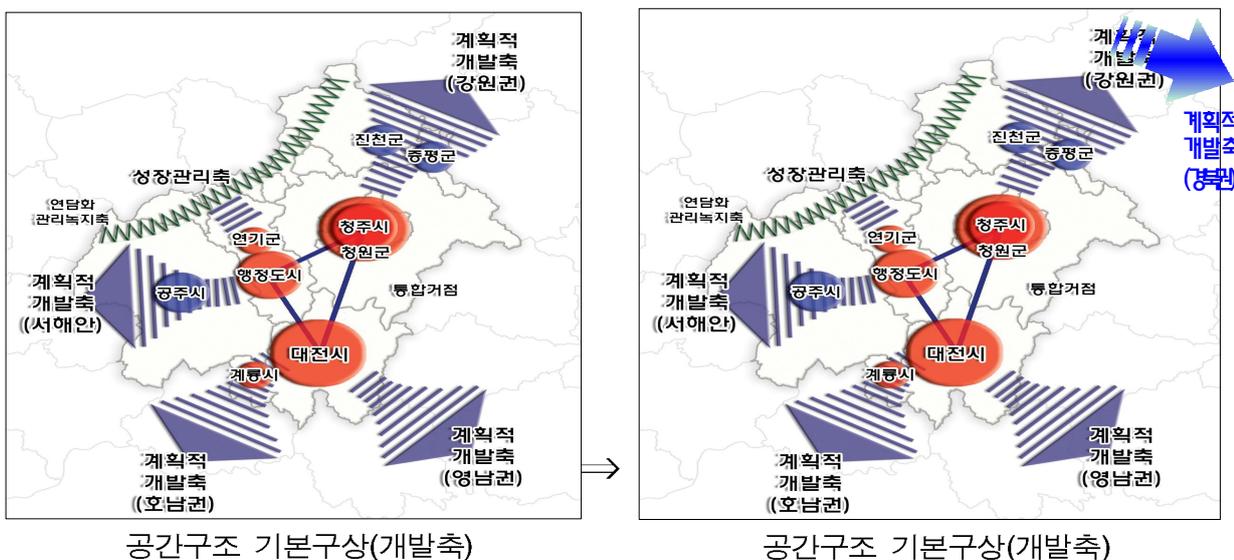
다. 집행부 검토의견

○ 우리도가 요청한 사항들이 대부분 계획에 반영되었으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충남, 대전과의 이해 관계로 인하여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 겠음

- 계획적 개발촉 보완(청주·청원·보은⇒경북내륙권) - 미반영
- 남북3축고속도로(증평~보은~영동~무주) - 미반영
- 청주~중부물류기지~행정도시간 고속화도로 - 미반영

○ 부문별 의견

- 기본구상에 있어 공간구조 기본구상의 경북권 개발축을 설정, 청주·청원·보은에서 경북내륙권으로의 체계적·단계적 개발을 유도하여 개발 지역내의 난개발 방지 및 적정수준의 도시적 개발촉진을 유도



- 부문별 계획의 광역교통계획에서의 고속교통순환체계 형성과 교통 네트워크 구축을 기하고 행정도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청주~충부물류기지~행정도시간 고속화도로와 청주시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남북3축고속도로(증평~보은~영동~무주)를 계획에 포함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도시 주변의 교통량을 감소시키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시 우리도의 의견에 대하여 대전, 충남과 상호 이해 관계가 상충되어 계획 반영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호 협의와 절충을 통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필요하고
- 관계전문가 및 관련 4개 시·군의 추가 의견을 제시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은 주요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추후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시 구체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개발하여 우리도가 행정도시의 배후 지역의 기능을 다하고 상생의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검토의견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¹⁾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 지역과 인접지역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1) 광역계획권이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는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광역계획권 차원의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계획 제시와 도시기본계획 및 하위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은 국가중추행정 및 자족기능을 갖춘 중부권 거점권역 형성, 21세기 문화 및 첨단산업의 혁신도시 네트워크 구현, 환경친화적 정주기반 조성과 난개발·연담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간구조는 첫째, 대전·계룡-청주·청원-행정도시·연기-공주-진천·증평지역을 연계하는 도시네트워크 형성 둘째, 산업구조 및 경제기반 개편을 위한 혁신거점 육성 셋째, 광역교통 연계망의 합리적 구축 넷째, 광역권의 계획적 성장관리를 통해 “네트워크도시”지향의 효율적 도시개발 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목표와 공간적 기본구상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계획, 녹지관리계획 등 부분별 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 관계 시도 및 시군 의견 수렴,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계획안 수립, 공청회 개최를 통한 보완등 절차를 거쳐 수립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집행부의 의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전, 충남과 상호 이해

관계가 상충되어 반영되지 아니한 경북내륙권 지향 개발축과 남북 3축 고속도로, 청주-중부물류기지-행정도시간 고속화도로와 관계 4개 시군의 추가의견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안(별첨)

[참고자료]

광역도시계획

□ 광역도시계획 개요

- 인접한 2이상의 도시와 주변지역을 계획단위로 수립하여 도시간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 적정성장관리를 도모
-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됨)

□ 계획수립권자

- 같은 도의 관할구역 : 도지사(2개 이상의 시·도는 공동수립)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 :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의 요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건설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공동수립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 계획의 주요내용(2020계획 예시)

- (1) 계획의 목표와 전략
- (2) 광역도시권의 현황 및 특성
- (3)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 개편구상
- (4) 부문별 계획
 - 광역토지이용계획
 - 여가공간 및 녹지관리계획
 - 환경보전계획
 - 방재계획
 - 광역교통계획
 - 광역공급 및 이용시설계획
- (5)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계획
- (6) 집행 및 관리계획